

<몰로토프에게 보내는 시티코프의 보고>

V.M. 몰로토프 동무 귀하

북조선인민회의 상무위원회와 [북조선]인민위원회는 1948년 2월 5~8일에 인민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습니다:

1.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의 통제숫자 이행에 관한 보고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의 통제숫자에 관한 입법.*
2. 1947년도 예산 집행과 1948년도 예산에 관한 입법.
3. 조선의 임시헌법안에 관한 보고와 조선의 임시헌법 채택.**
4. 제3기 인민회의 후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채택한 법률들의 확정:
 - a) 북조선의 지하(地下), 산림, 수역(水域)의 국유화에 관하여.
 - b) 북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유통과 북조선 영토에서 유통 중인 구 화폐의 교환방법에 관하여.

지금 인민회의 회기를 준비하는 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-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의 통제숫자 이행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1948년도 인민경제발전과 예산의 통제숫자가 작성되고 있습니다.

인민회의 회기에 조선임시헌법의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
조선임시헌법안은 1947년 11월에 북조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위원단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.

귀하께 요청합니다:

1. 북조선인민회의 회기 소집을 상기 의사일정과 함께 승인해주십시오. 회기 때 헌법에 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결의가 채택될 것입니다: “인민회의 회기는 조선임시헌법 제정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한다. 그리고 헌법위원단이 기초한 헌법안에 대한 조선인민의 의견과 바람이 최대한 충분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:
 - 1) 헌법위원단이 기초한 조선임시헌법안을 전 인민적 논의를 위해 발행한다.
 - 2) 헌법안의 논의 및 확정을 위해 1948년 5월 북조선인민위원회대회를 소집한다.
 - 3) 대회의 인적 규모 및 대회 대의원의 선출방식은 인민회의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.

그밖에, 북조선인민회의 산하에 민족보위국을 설립하고, 인민회의 회기 폐막일에 평양시에서 조선민족군대가 1개 사단과 군관학교의 참여하에 시위와 행진을 벌일 수 있도록 귀하의 허락을 요청합니다.

* 해당 보고서는 RG 242, Captured Enemy Doc. {North Korean Document}, Entry 300C, Box 52, Doc.201142, “북조선인민경제의 발전의 대한 예정수짜”,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획국, 1947을 참고.

** 임시헌법 초안은 RG 242,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, Captured Korean Documents, Doc No. SA 2007 I, Box 450, Item #76, 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臨時憲法草案”, 1948을 참고.

시티코프

1948년 1월 [?]일